

# 과업지시서

## 1. 과업목적

- 2022년 강릉시의회 의정활동 장면을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촬영하여 일정별, 내용별 동영상 파일로 제작, 영구 보관하고,
-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대내·외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,
-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강릉시의회의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.

## 2. 과업개요

- **과업명** : 2022년 강릉시의회 의정활동 동영상 촬영
- **과업기간** : 2022년 1월 ~ 12월 회기 종료시
- **과업수량** : 방송용 FULL HD 파일, USB저장장치
- **제작기간** : FULL HD 파일 1개, USB 1개 ☞ 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
- **제작방식** :
  - FULL HD 제작 : 일자별 내용별로 50분 내외용으로 자막 삽입, 편집 (기록자료 및 방송 송출용)
  - USB : 일자별 내용별로 50분 내외용으로 자막 삽입 편집 (기록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용)

## 3. 과업내용

- 강릉시의회 **회기별(임사회, 정례회) 본회의, 각 상임위원회** 등의 활동내용을 촬영, 제작한다.
- 영상 촬영시에는 모든 의원이 고루 촬영될 수 있도록 하여 **일부 의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**하여야 한다.
- 촬영은 TV 방송에도 적합한 **HD급 방송(촬영)장비를 사용**하여야 하며, 현장감 있는 방송을 위해 촬영장비는 고성능 카메라 2대를 포함하여 최소 4대 이상을 이용, 다양하고 입체적인 화면구성으로 **질문자 및 답변자 화면분할 동시표출 등 전문기법으로 촬영**, 편집한다.

- 방송내용의 이해 도모를 위하여 **일반적인 사항(회의내용, 출연자 성명 등)**을 자막 처리하여 제작한다.
- 제작업체는 매 회기 촬영(편집 포함)시마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아래의 자격기준에 맞는 적합한 기술과 실무경험(영상촬영 및 방송관련 분야)을 보유한 4인을 지정·투입한다.

구 분	매 회 투입인원	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	
		이공계 기술자격 기준	상경계열 자격기준
계	4		
중급기술자/정보통신분야 (연출/편집)	1	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	석사 3년 이상,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, 고졸 12년 이상
중급기술자/정보통신분야 (촬영)	3		

- ※ 1) 기술자란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.
- 2)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.
- 3)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.
- 4)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.

- 제작업체는 사전에 강릉시의회의 제작목적,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**촬영일정을 협의**하여야 하며, **회의시작 30분전까지 촬영 준비를 완료**하고 촬영하도록 한다.
- FULL HD 파일은 일자별 내용별로 50분 내외의 분량으로 촬영시간에 따라 조정하여 자막 삽입 및 일자별 편집하되, 성과품은 시의회 승인 후, 제작·제출한다.
- **성과물 제출**
  - FULL HD 파일 : 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
  - USB : 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
- **대가의 지급** : 기초단가(일당)에 따라 매 회기 종료 후 지급
  - 회기별 동영상 촬영에 따른 결과물 확인 후, 대가 지급  
☞ 작업일지(촬영내역), FULL HD 파일, USB
- ※ 2022년 회기별 과업추진일정(안) : 별첨

## 4. 업체조건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
  - 1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에 의한 **비디오물 제작신고**를 필한 업체 또는
  - 2)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**방송영상독립제작신고**를 필한 업체

-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**강릉시**에 두고 있으며, 최근 **3년 이내 동영상 촬영 및 제작** 등의 과업내용으로 공공기관 단일계약 건으로 20,000천원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.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**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**

## 5. 과업수행시 유의사항

### 가. 일반지침

- 1) 본 과업수행시 강릉시의회의 사정에 의해 촬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사항이 있을 시, 강릉시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  
단, 촬영일정에 의해 장비를 설치한 이후라도 전달까지 촬영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는다
- 2) 제작자는 계약 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매회기 종료 후 기성계를 제출, 2022년 의정활동 동영상 촬영 용역 종료 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나. 과업준수사항

- 1) 촬영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촬영장비를 활용해 영상미를 제고시켜야 한다.
- 2) 촬영시 HD급 이동형 카메라 4대 이상으로 질문자와 답변자 화면분할 동시 포출 등 다양한 전문촬영기법 활용과 전체의원을 고르게 촬영한다.
- 3) 멀티미디어의 특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.  
(예 : 필요에 의해 우리시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방송국에 홍보가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WMV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.)
- 4) 촬영된 결과물은 FULL HD 파일과 USB로 제작 제출한다
- 5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땐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.

## 6. 계약위반 사항

다음 사항의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가.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
- 나. 계약기간 내 과업의 진척이 현저히 미달될 때
- 다. 과업 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판정될 때

## 7. 기타

상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약 조건에 준한다.

# 2022년 회기별 추진일정(안)

## 과업일반지침

회별	회기	예상안건	촬영편수
계	8회	정례회 2회, 임시회 6회	34편 - 본회의 18, 상임위 16
1	제297회 임시회 2.7.~2.14.	○ 시장 신년인사 ○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○ 시장제출 및 의원발의 안건	본회의 2편, 상임위 2편
2	제298회 임시회 3.21.~3.25.	○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○ 시장제출 및 의원발의 안건 ○ 현안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	본회의 2편, 상임위 2편
3	제299회 임시회 6.20.~6.27.	○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○ 시장제출 및 의원발의 안건	본회의 2편, 상임위 2편
4	제300회 임시회 7.1.~7.4.	○ 제12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원구성 - 의장단(의장, 부의장) 선거 - 상임위원장(운영, 행정, 산업) 선거	
5	제301회 임시회 7.21.~7.29.	○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○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	본회의 2편, 상임위 2편
6	제302회 정례회 9.1.~9.23.	○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○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결산 ○ 시정질문 및 답변	본회의 4편, 상임위 2편
7	제303회 임시회 10.21.~10.28.	○ 2023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 ○ 시장제출 및 의원발의 안건 ○ 현안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	본회의 2편, 상임위 2편
8	제304회 정례회 11.25.~12.19.	○ 2023년도 당초예산안 ○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○ 시정질문 및 답변	본회의 4편, 상임위 4편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제1조 (목적) 본 과업지시서는 강릉시의회와 과업수행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에 대한 사항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해석) ① 본 과업수행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 라 함)는 과업지시서 및 강릉시의회(이하 “발주처” 라 함)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고,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“발주처” 와 “계약상대자” 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,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처” 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③ “발주처” 가 “계약상대자” 에게 지원한 촬영장소 및 물품에 대한 파손, 손실과 기타 제작시부터 완성까지의 물적, 인적 사고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 에게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 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④ “발주처” 는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되거나,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에의 하자 또는 착오 있음이 발견될 경우,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“발주처” 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“계약상대자” 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
⑤ “계약상대자” 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“발주처” 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, 이때 “계약상대자” 가 “발주처” 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3조 (과업의 전문성) ① “계약상대자” 는 본 과업수행 시 동영상 촬영, 자막제

작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Team을 구성, 최상의 화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영상물 제작과 편집을 위한 자체 전문기술 인력과 영상촬영 비디오카메라(Betacom), 편집기기, 스튜디오·녹음편집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작과정에 참여·활용해야 한다.

제4조 (과업의 범위) ①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의회와 협의 결정하고 편집한 원천 자료와 함께 “발주처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·촬영·편집하여야 하며 특히 방송,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작 및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.

제5조 (서류제출) “계약상대자”는 매 회기 영상제작편집 종료 시 결과물과 기성계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업무보고)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과업진척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“발주처”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.

제7조 (과업의 보안수정·변경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용역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하여 “발주처”가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·수정·변경하여야 한다.

③ 보안 및 수정 등은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.

제8조 (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) ①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저작권 기타의 권리와 중간 성과물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“발주처”

에게 귀속된다.

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 및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“발주처”에게 있으며 “발주처”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납품 완료 시 “발주처”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 (납품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결과물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기한까지 보완·수정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.

② 용역결과 납품은 성과물의 원본과 수집·촬영·편집한 원천자료를 목록(항목, 출처, 정보량 등)과 함께 “발주처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모든 자료 제출 시 전산화된 파일 형태가 가능한 것은 출력물과 함께 전산 자료를 DVD로 제출한다.

④ “계약상대자”는 용역의 완성검사 요청 시에는 최종 성과물과 함께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계약종료 후 협력) ① 계약종료 후라도 용역 성과의 내용에 하자 또는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“발주처”가 재검토를 요청하면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작완료 후 1년간 영상에 따른 기술을 보장해야 한다.

제11조 (보완) 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(생산된 자료, 성과물 등) 기타 정보 등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와 사전 승인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제12조 (기타) ①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약조건에 준한다.

② 본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의회와 협의 후 행해야 한다.